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

윤민섭 박사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MinSeop Yun(eandp@hanmail.net)

목 차

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방향성

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구조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방향성

❖ 디지털자산 시장 환경 반영

- 탈 중앙화, 초국경성 등 디지털자산의 특성 반영
 - ✓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의 현실화
 - ✓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자율성 확보
-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태 현황 반영
-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체계 정비 및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규제 근거 마련

-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등 근거 마련
 - ✓ EU, 미국 등 국제적 흐름 반영

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방향성

❖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 및 국제적 정합성 확보

- 디지털자산 관련 해외 입법사례
 - ✓ 유럽(MiCA), 일본(지급결제법 등), 홍콩(가상자산사업자 운영지침) 등 주요 국가 입법례 및 규제 사례
- 국제 기구 의견 및 권고사항 반영
 - ✓ IOSCO(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 BIS 등 권고 사항 반영
- 국내 관련 법률 참조
 - ✓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소비자기본법 등

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방향성

❖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화

➤ 이용자 자산보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미흡했던 이용자 보호 사항 도입

➤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관계 일반 준수사항 등 마련

➤ 분쟁조정제도 도입

❖ 이해상충 해소

➤ 디지털자산업자의 업무상 이해상충 해소

✓ 상장심사, 시장감시 등 업무관련 이해상충 요소를 시스템적으로 해소

❖ 기본법 + 업권법

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구조

❖ 총 10편 171개 조문으로 구성

구분	조문 등	비고
제1편 총칙	제1조 ~ 제10조	목적, 적용범위, 정의 규정 등
제2편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와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제11조 ~ 제14조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국가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등
제3편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제15조 ~ 제18조	디지털자산위원회,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제4편 디지털자산업	제19조 ~ 제101조	디지털자산업자 진입규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행위규제, 건전경영 등
제5편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제102조 ~ 제115조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상장, 유지심사, 상장폐지 등

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구조

구분	조문 등	비고
제6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15조 ~ 제121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제7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등	제122조 ~ 제134조	협회, 상장심사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35조 ~ 제155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검사 및 조사, 조치사항, 과징금등
제9편 보칙	제156조 ~ 제162조	신고자 보호, 국제협력, 분쟁조정 등
제10편 벌칙	제163조 ~ 제171조	벌칙, 양벌규정, 감면사항, 과태료 등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1. 목 적

❖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등을 명시

- 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디지털자산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역외적용 명시(법안 제2조)

- 다만, 발행의 경우 해외 발행인에 대해서 발행신고서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발행신고서에 있어서는 역외적용 제외(법안 제102조)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3.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유형

❖ 분산원장 개념을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
되, 전자화폐 등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의

- 법안 제3조제1항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

❖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유형 구분

유형	정의
스테이블 코인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 는 것으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기타 디지털자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제외한 디지털자산으로 “일반 디지 털자산”으로 정의

* MiCA의 이머니토큰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충돌 및 디지털자산의 활용성에 대
한 제한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였음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4.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유형 및 권리

❖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유형을 전문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로 구분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개념 차용
- 전문이용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범위 준용

❖ 이용자의 6대 권리 명시(법안 제11조)

1. 디지털자산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디지털자산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디지털자산의 거래 및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이용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5. 국가와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 국가의 책무(법안 제13조)

-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실행
-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관련 규제 개선
- 이용자의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

❖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법안 제14조)

-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 이용자에게 공정한 거래환경을 제공할 책무
- 이용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책무
- 이용자를 충분한 정보 등을 제공할 책무
-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Ⅲ.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6.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

❖ 심의의결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 구성
-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

❖ 3년단위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

-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1년 단위 디지털자산산업 실태조사

-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현황
- 디지털자산업자 영업활동 현황
-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도 평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7. 디지털자산업 유형 및 진입 규제

❖ 규제 필요대상 최소한 규제

- 기존 규정, 영업행위 행태, MiCA 등을 참조하여 9개로 유형화하고, 각 업자간 진입규제 마련
- 겸영업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이해상충 방지 필요

단위	유형	정의
인가	자산매매업	자기계산으로 매매 또는 교환
	자산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등
	자산보관업	디지털자산 보관
등록	자산집합운용업	처분 및 대여의 경우 원칙적 제한
	자산지갑관리업	수탁형 지갑사업자
	자산일임업	금전 및 디지털자산에 관한 매매 등의 권한의 일임
	자문업	디지털자산의 가치 및 매매 등에 관한 자문
신고	주문전송업	이용자의 주문을 전달 하는 업
	유사자문업	개별성 없는 자문을 하는 업

Ⅲ.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8. 디지털자산업 행위규제

❖ 공통 및 업자별 행위규제

유형	행위규제
공통 행위규제	이해상충관리(안 65조), 설명의무(안 67조), 부당권유 금지(안 68조), 광고규제(안 69조), 임의적 입출금 제한(안 71조) 등
자산매매업 또는 자산중개업	자기계약금지(안 82조), 최선집행의무(안 83조), 임의매매 금지(안 84조), 예치금 보호(안 87조), 디지털자산 보관(안 88조) 등
자산보관업	자산의 보관(안 91조), 보관계약(안 92조) 등
자산지갑관리업	이용자의 자산 보관금지 등(안 93조)
자산집합운용업	매매 권유, 신용공여 등 금지(안 95조)
자산일임업 또는 자문업	이용자의 재산 등 보관 및 예치 금지 등(안 97조)
주문전송업	주문전송 절차 등의 고지 등(안 100조)
유사자문업	개별상담 등 금지(안 101조)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9. 디지털자산업자 건전성 규제

❖ 일정 규모이상의 디지털자산업자 대상 건전성 규제

- 대주주변경 승인제도(안 제35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제40조)
- 준법감시인(안 제41조) 및 위험관리책임자(안 제44조) 등 임명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51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52조) 등

❖ 전산안정성 유지 규정

- 전산안정성 확보의무(안 제55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안 제56조)
-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안 제58조)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10. 디지털자산의 발행

❖ 발행인의 자격 요건

- 스테이블코인인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 가능(안 제103조)
 - 스테이블코인은 환불 또는 환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발행인의 안정성 등이 중요하고, 통화주권 등을 고려함
 - 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인가요건은 한국 법인일 것, 재무건전성 및 사업계획타당성 등
-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제한 없음(안 제104조)
 -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서 법률상으로는 형태,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 발행신고서제도의 도입

- 적용범위 :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발행주체가 없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규제 적용제외(안 제102조)
 - * 적용제외 대상 디지털자산의 경우도 상장심사제도는 적용
- 발행금액 및 수량에 관계없이 발행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의 수리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 허용(안 제104조)
 - * 금융위의 발행신고서 형식심사 명문화(안 제104조제6항)
- 준법감시인(안 제41조) 및 위험관리책임자(안 제44조) 등 임명
- 사전모집제도 도입으로 사전모집의 경우 발행신고서 미제출 가능
 - * 사전모집이란 “발행인이 디지털자산을 이용자에게 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하는 것”(안 제9조제11항)

Ⅲ.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11.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유통

❖ 디지털자산시장 개설 및 운영

- 디지털자산중개업자 중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업(이하 디지털자산거래소등)으로 지정받은 자만 디지털자산시장 개설 및 운영 가능(안 제109조)

<디지털자산시장 개설자의 범위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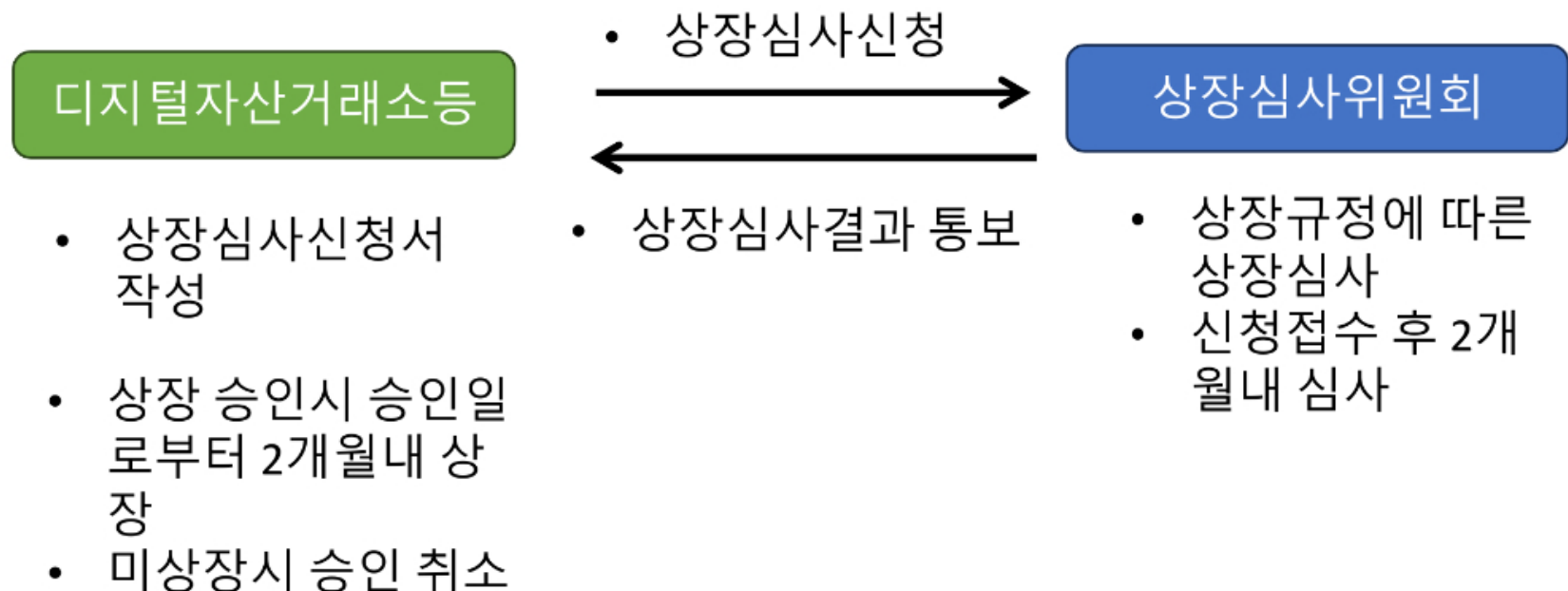
디지털자산중개업	요건(안 제89조)	비고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	금융위 지정 (원화거래소)	디지털자산시장 개설 및 운영 가능 거래소 또는 시장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다자간매매체결업자	금융위 지정 (코인거래소)	
그외 중개업	-	디지털자산시장 개설 및 운영 불가 거래소 또는 시장 등 명칭 사용 불가

Ⅲ.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의 상장

-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상장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상장심사위원회에 상장심사를 신청하여 함(안 제110조)
 - 일본은 법정협회인 JVCEA에서 상장심사 업무 수행

<디지털자산 상장 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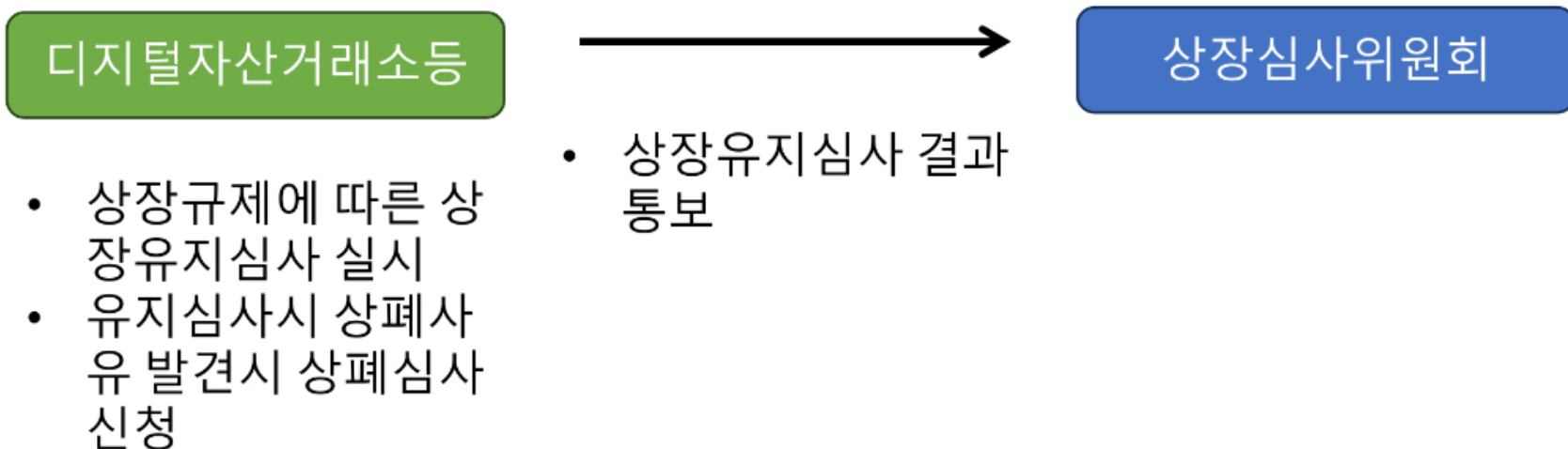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의 상장 유지심사

- 상장심사위원회의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유지 기준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등이 자체 심사 후 해당 결과 상장심사위원회에 통보(안 제111조)

<디지털자산 상장 유지심사 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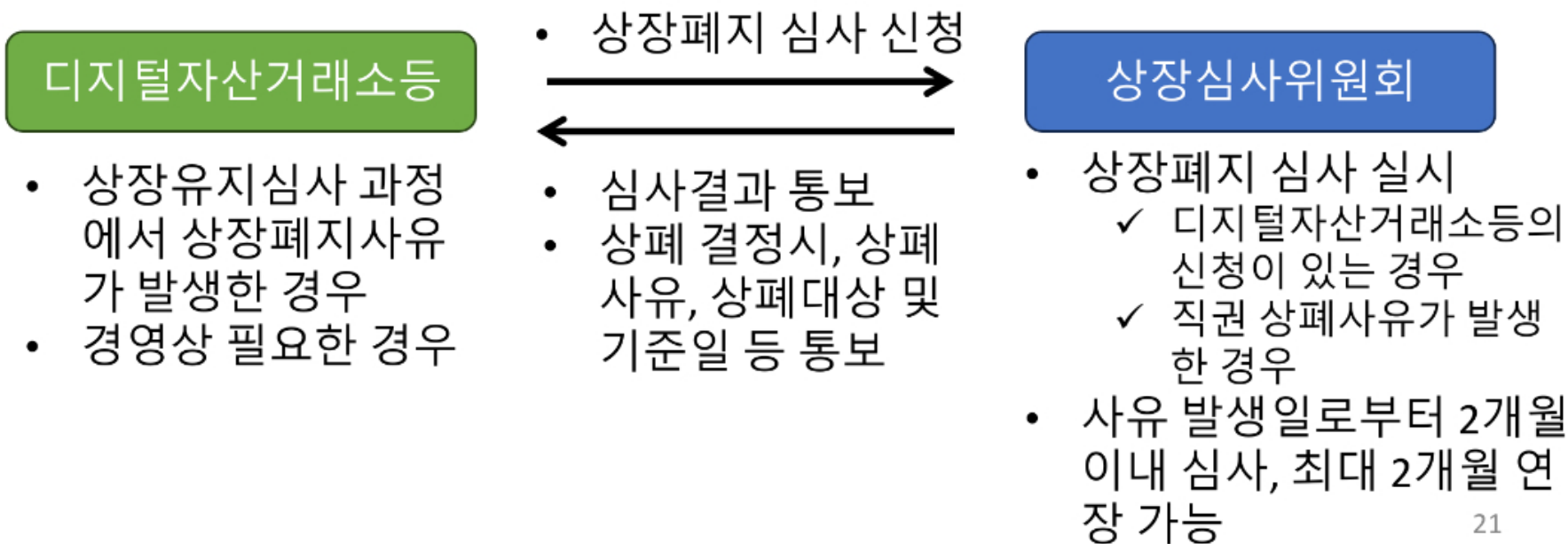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의 상장폐지 절차

-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신청 또는 상장심사위원회 직권으로 상장폐지 심사 실시(안 제112조)
- 상장폐지 심사결과 이용자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모두 상장폐지 하여야 함

<디지털자산 상장 폐지 절차안>



Ⅲ.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12. 디지털자산의 공시 규제

❖ 발행공시와 유통공시로 구분하여 규율

-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현황 등을 반영하여, 발행인 및 디지털자산업자가 가능한 범위로 공시체계 설계
- 발행공시 : 금융위원회가 신고수리한 발행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 유통공시 :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상장된 디지털자산에 한정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공시의무 부여

* 상장유지심사 등을 통해 최신성 유지

상장 디지털자산 관련 공시사항	1. 디지털자산의 주요 내용 2.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설명서 3. 디지털자산 상장유지심사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	--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1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안 제115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안 제117조)

➤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금지

➤ 시세고정 및 안정 목적의 거래 등의 금지. 단,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구분	요건
안정조작	발행인이 상장 후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매매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시장조성	상장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 부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안 제119조 및 제120조)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 과징금, 형사벌 등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안 제147조)

14.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감시

❖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독립적 기관인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시장감시 업무 수행

➢ IOSCO는 시장감시 업무를 대표적 이해상충 행위로 명시

➢ 홍콩의 경우 시장감시 업무는 독립적 제3자 수행 의무화

➢ MiCA는 시장감시 업무 제3자 위탁가능 업무로 규정

➢ 미국 코인베이스는 나스닥과 감시공유계약을 통해 제3자에 의한 시장감시

I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15. 디지털자산시장의 자율규제

- ❖ 역동성 있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적 시장 환경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 설립
- ❖ 자율규제기구는 이해상충적 요소를 시스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디지털자산시장의 SRO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 기능을 합친 것이라 할 수 있음
 - * 한국거래소는 회원제 기관으로 투자중개업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임
- ❖ 자율규제기구는 이익집단적 요소 보다는 중립성이 중요한 요소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구조

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 디지털자산업자는 의무 가입이며, 그 밖에 관련 사업자의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 가능함

- 디지털자산업협회장의 자격 및 선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정관의 정함에 따름

❖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회원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 디지털자산업의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의 부수 업무

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구조

나. 상장심사위원회

- ❖ 협회는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를 수행하는 상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30조)
- ❖ 상장심사위원장은 상장심사위원회 추천으로 사원총회에서 선임
 - 다만, 선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부적합사유를 밝혀 해임을 요구한 경우 당연 해임됨
-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상장규정 제정(안 제131조)
 - 디지털자산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 디지털자산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 디지털자산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디지털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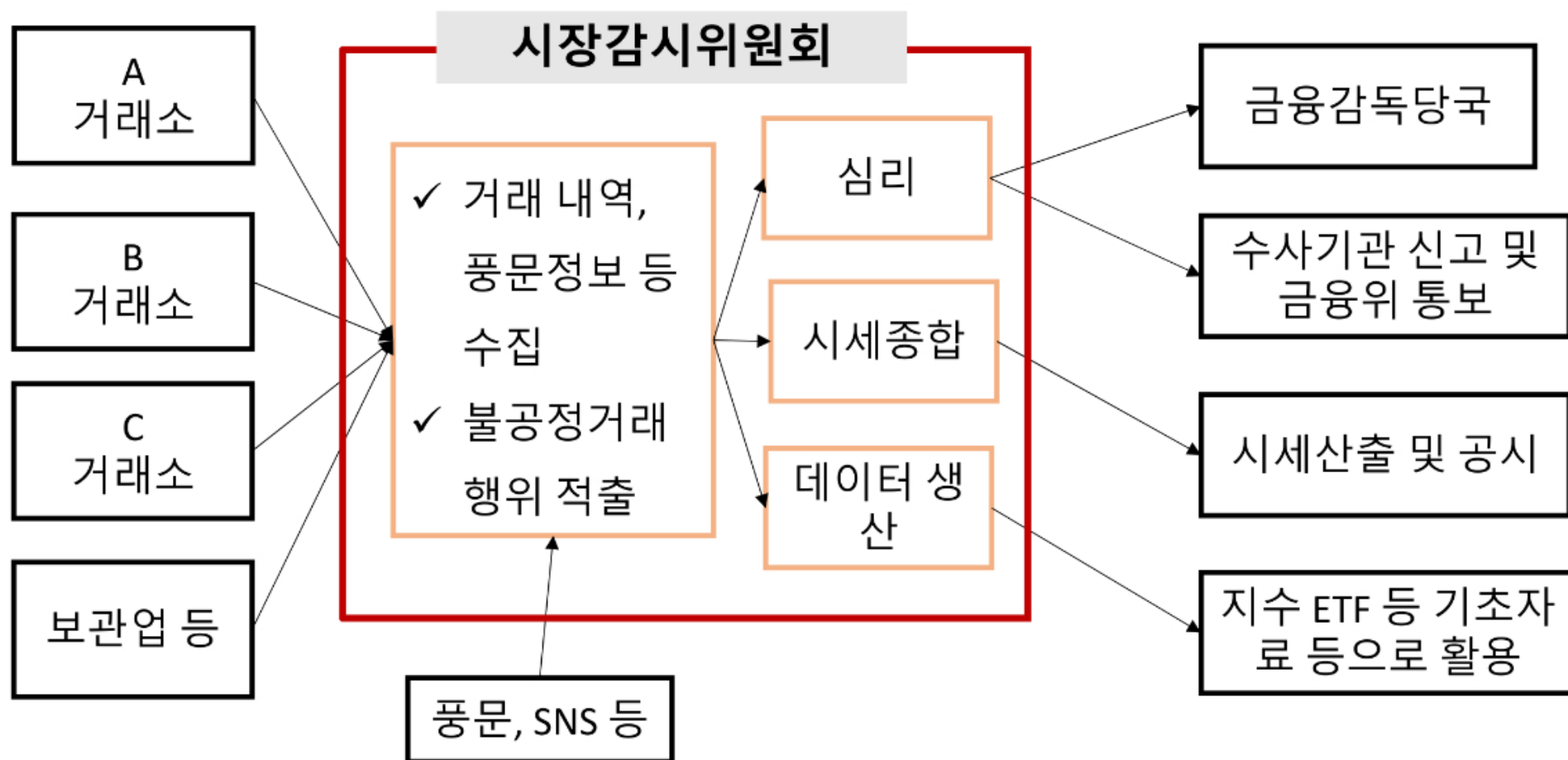
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구조

다. 시장감시위원회

- ❖ 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 의무 설치(안 제132조)
- ❖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 추천으로 사원총회에서 선임
 - 다만, 선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부적합사유를 밝혀 해임을 요구한 경우 당연 해임됨
- ❖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 시장감시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을 포함한 회원에 대해서 감리 권한 보유
-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등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안 제158조)
 - 외국의 디지털자산시장감시 기관등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력 허용

II.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구조

<디지털자산 시장감시위원회 역할>



* 출처 : 25.2월 김남근 의원실 세미나 “가상자산시장 외부감시 필요성”

Ⅲ.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내용

16.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 ❖ 예치금 및 이용자 디지털자산의 도산절연
- ❖ 전산장애 및 해킹 등 대비 준비금 또는 보험가입(안제59조)
- ❖ 이용자와 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도입(안 제67조)
- ❖ 임의적 입출금 제한(안 제71조)
- ❖ 부당권유행위 금지(안 제68조)
- ❖ 표준약관 제도의 도입(안 제75조)
- ❖ 분쟁해결제도 도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안 제160조)
 - 협회의 자율분쟁조정

감사합니다.